



## 기/계/분/야

### 1. 재해발생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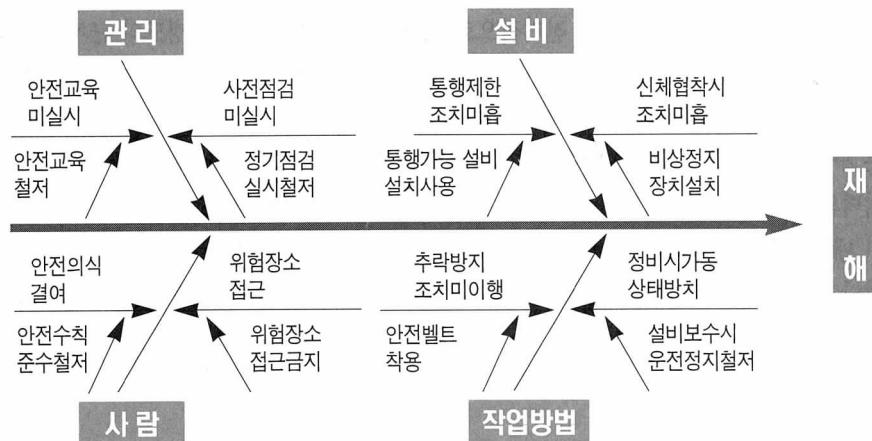
2000년 6월 10:40분경 강원소재 (주)○○산업 내에서 골재이송용 벨트 컨베이어의 모래 호퍼내로 드셀이 고장나 모래 계량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측면 벽쪽으로 이동식 사다리를 타고 호퍼에 올라가 확인하던 중 가동 중에 있던 벨트 컨베이어에 추락하여 슈트와 벨트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.



### 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정비작업시 운전정지 미실시
- 나. 통행제한조치 미실시
- 다. 비상정지장치 미설치

### 3. 특성요인도



### 4. 동종재해예방대책

#### 가. 정비작업시 가동중인 설비 운전정지

벨트컨베이어 위의 모래호퍼에 올라가서 점검 등의 작업을 할 경우에는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, 운전을 정지한때에는 임의로 운전 할 수 없도록 LOCKOUT장치 등을 사용하여야 함.

#### 나. 작업발판 등 설치

컨베이어가 운전 중인 상태에서 호퍼 등을 점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발판,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, 컨베이어 측면에도 방호울을 설치하고 호퍼실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에도 안전문을 설치하여 임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함.

#### 다. 비상정지장치 설치

운전중인 벨트컨베이어 위에서 모래 호퍼 점검 등의 작업시 컨베이어에 말려들 위험이 있을 때 즉시,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모래호퍼와 자갈호퍼사이 양쪽에 설치하여야 함.

### 5. 법위반 사항

#### ◎ 사업주 관련사항

법 제23조 : 안전상의 조치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

법 제31조 제1항 : 근로자에게 안전교육미실시시 5백만원이하의 벌금



## 전/기/분/야

### 1. 재해발생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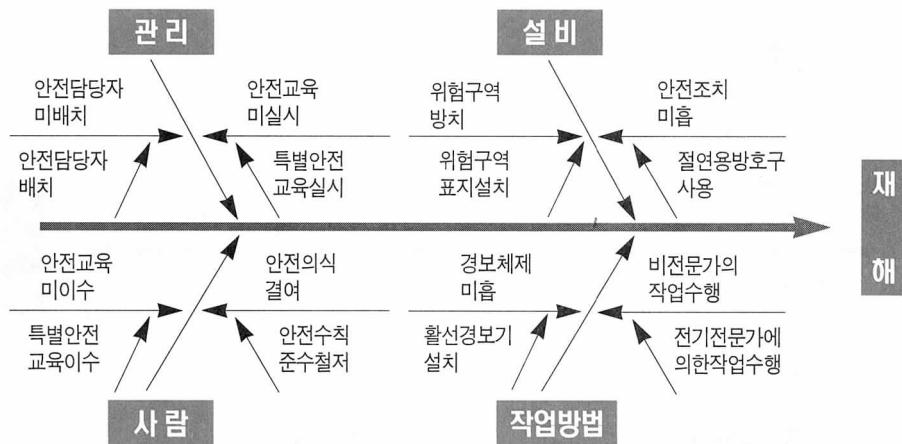
2000년 5월 오전 11:50분경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내부의 전등이 깜빡거려 지하전기실 내의 수전반을 점검하던 중 COS의 절연파괴로 인한 Arc로 피재자가 가슴, 목 등에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.



### 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정전작업 미실시
- 나. 절연보호구 미착용
- 다. 관계자 이외의 출입금지 미시행

### 3. 특성요인도



### 4. 동종재해예방대책

- 가. 정전작업실시 또는 활선 근접작업시 안전수칙 준수

- 당해 작업시 신체의 일부가 충전부에 접촉하여 감전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전작업을 실시하거나 절연보호구 등을 착용한 후 작업하여야 함.

- 정전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접근한계거리 유지 (22.9kV:30cm이상) 또는 충전전로에 활선경보기 를 활용하여야 함.

- 나. 근로자 특별안전교육 실시 철저

특고압 활선근접작업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사전에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.

- 다. 전기안전담당자 지정

전기실 내부에서의 작업시 전기안전담당자를 지정, 담당자의 책임 하에 작업을 실시하여야 함.

### 5. 법위반 사항

- ◎ 사업주 관련사항

법 제23조 : 안전상의 조치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이하의 벌금

법 제31조 제3항 : 근로자에게 특별안전교육 미실 시시 500만원이하 벌금

- ◎ 안전관리자, 관리감독자 관련사항

법 제31조 제3항 : 상기와 동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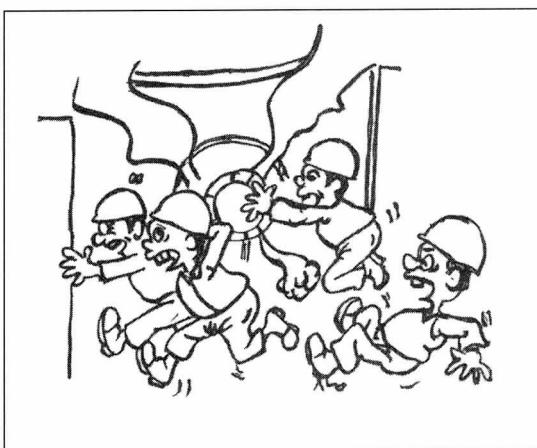
재  
해



## 화/공/분/야

### 1. 재해발생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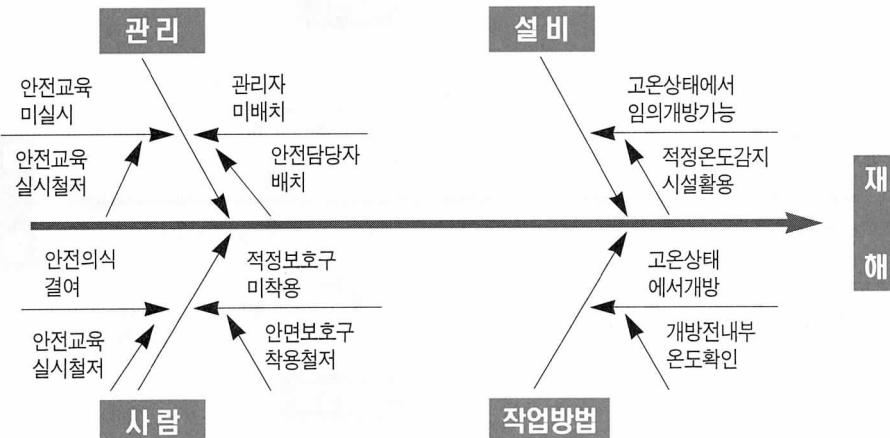
2000년 4월 20:00경 폴리스틸렌을 제조하는 울산시 소재 ○○(주)공장에서 공정을 정지시키고 내부청소를 위한 작업중 Spray Column의 34인치 맨홀을 개방하다 내부에 체류하고 있던 약72℃의 Styrene Monomer증기 등에 접촉하여 근로자 5명이 화상을 입은 재해임.



### 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화상의 위험이 있는 고온에서 맨홀개방
- 나. 작업절차상 용기개방 온도가 높음
- 다. 보호구 미착용

### 3. 특성요인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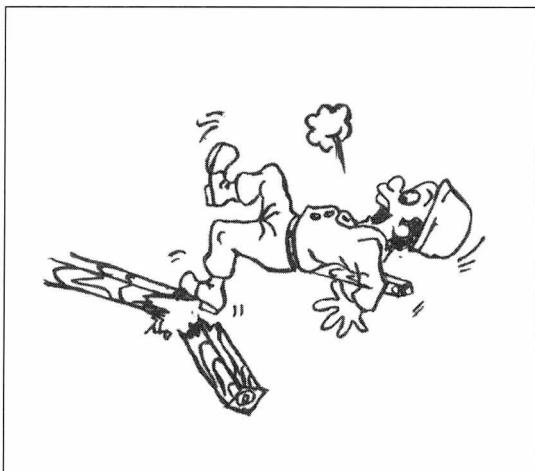




## 건/설/분/야

### 1. 재해발생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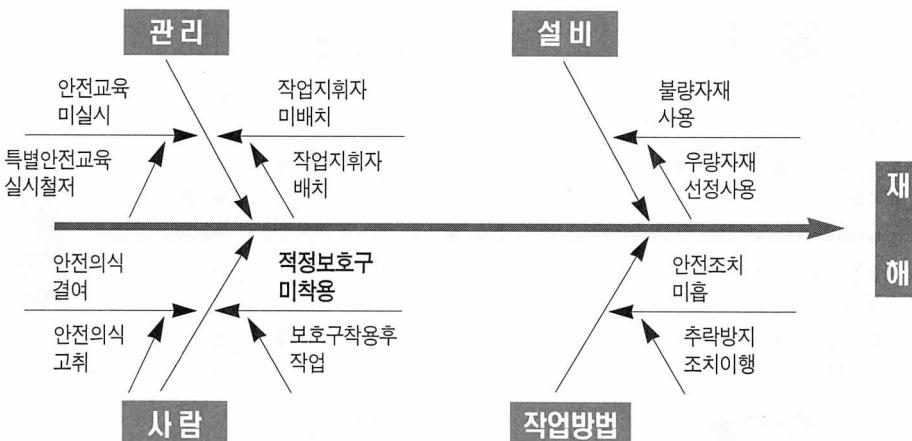
2000년 6월 16:00분경 부산시 소재 다세대 신축 현장에서 비계공인 피재자가 낙하물 방지망 설치작업 중 멍에재( $2'' \times 4''$  목재, 약 2.5m)의 옹이 부위가 부러지면서 약 4.3m 아래 도로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.



### 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고소작업시 추락방지조치 미실시
- 나. 작업방법 불량
- 다. 불량 자재 사용

### 3. 특성요인도



### 4. 동종재해예방대책

#### 가. 고소작업시 추락방지조치 설치

작업발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작업자에게 안전대, 안전모를 지급,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함.

#### 나. 작업방법 개선

낙하물 방지망 멍에재에 무리한 힘응력이 발생치 않도록 베티줄을 설치 한 후 장선, 합판재 등을 설치하여야 함.

#### 다. 불량자재 사용금지

사용되는 부재는 사용전에 결함, 손상유무를 확인하고, 불량자재의 사용을 배제하여야 함.

### 5. 법위반 사항

#### ◎ 사업주 관련사항

법 제23조 : 안전상의 조치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

법 제31조 제3항 : 근로자에게 특별안전교육 미 실시시 500만원이하 벌금

#### ◎ 안전관리자, 관리감독자 관련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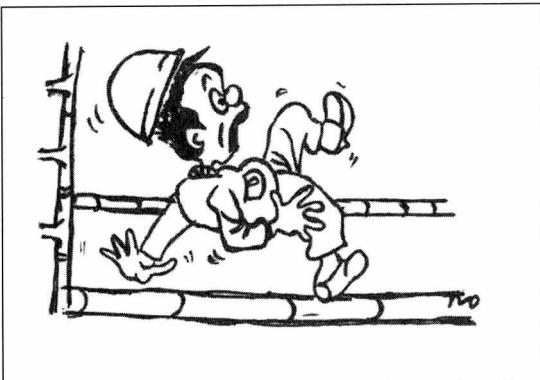
법 제31조 제3항 : 상기와 동일



조선분야

## 1. 재해발생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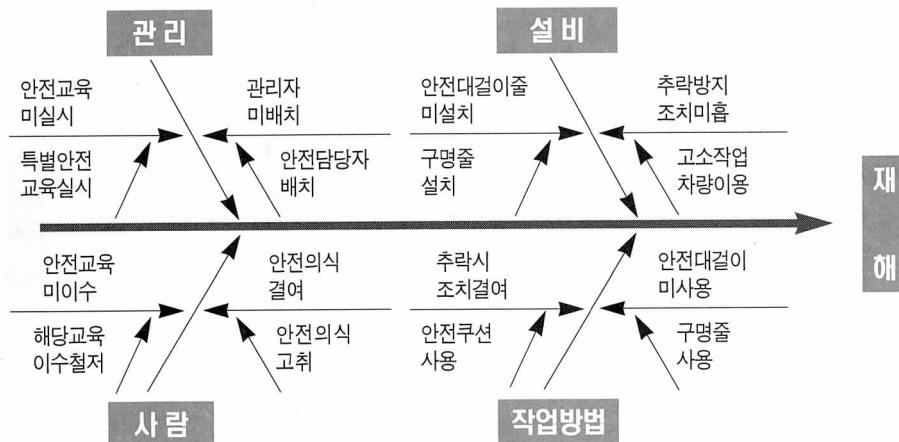
2000년 5월 울산시 소재 ○○(주)에서 바지선에  
선적된 해양구조물의 상부 자켓에 설치된 비계에서  
협력업체소속의 재해자 등 6명이 비계의 최상단을  
해체하여 크레인에 매달린バス켓에 싣고, 비계지지  
용 사다리를 해체하여 운반중 사다리가 2단에 걸리  
자 재해자가 3단으로 올라가 사다리를 받아 넘겨주  
고 고정된バス켓으로 내려가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 
재해임



## 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고소작업시 추락방지조치 미흡  
나. 안전담당자의 직무수행 미흡  
다. 사전안전교육 미실시

### 3. 특성요인도



#### 4. 동종재해예방대책

#### 가. 고소작업시 추락방지조치 실시

안전대를 착용하고, 고소에서 비계해체 작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.

## 나. 안전담당자의 직무수행 철저

고소에서 수행하는 비계해체작업은 위험한 작업이므로 안전담당자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.

- 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
  - 기구, 공구,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점검
  - 작업방법 및 근로자배치, 작업진행감시
  - 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착용상황감시

## 5. 법위반 사항

#### ● 사업주 관련사항

법 제23조 : 안전상의 조치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 
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

법 제31조 제3항 : 근로자에게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시 500만원이하 벌금

#### ◎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관력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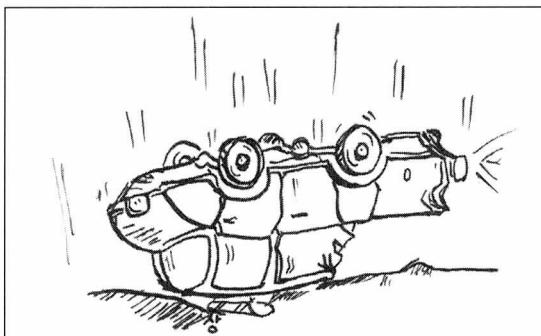
법 제31조 제3항 : 상기와 동일



## 교/통/분/야

### 1. 재해발생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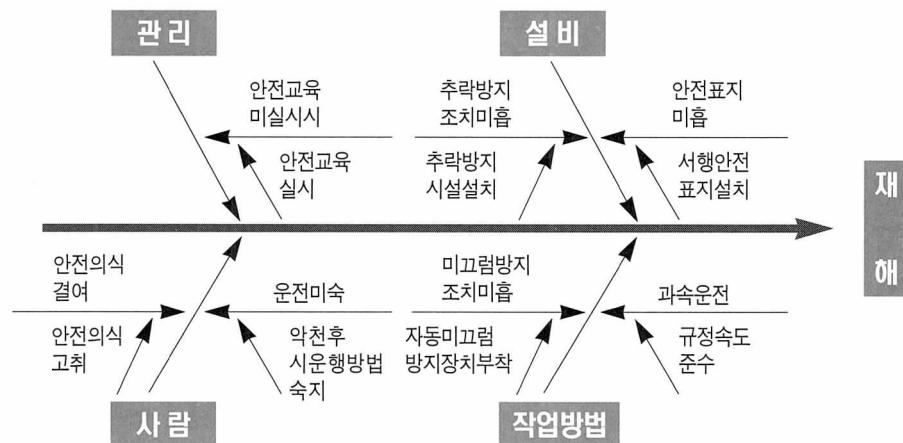
2월 28일 05시경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, 광주광역시 동구 ○○동 근처의 도로 폭 7m, 편도1차로 S자형 커브 길에서 시속100km/h의 속도로 운행 중 사고지점 50m 전방에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며 제동하자,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직경 22cm의 좌측 가로수에 부딪히면서 1m 아래의 언덕으로 추락 전복하여 차량파손과 운전자가 부상당하는 재해가 발생함.



### 2. 재해발생요인

- 가. 운전 미숙과 방심
- 나. 교통안전표지의 미비
- 다. 과속 및 방어운전 미실시

### 3. 특성요인도



### 4. 동종재해예방대책

- 가. 빗길 사고대비 안전운행 철저
  - 빗길 운전 시의 위험요인
  -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계수가 떨어져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짐
  - 운전자의 시계가 와이퍼의 작동범위로 한정됨.
  - 고속 주행시 수막 현상 발생.
  - 보행자에 대한 경계심이 결여됨.
- 나. 도로교통안전 표지 적재적소에 설치
- 다. 빗길 운행시 시야가 좁고, 가깝기 때문에 과속은 절대 해서는 않되며, 방어운전을 철저히 해야 함.

### 5. 법위반 사항

- ◎ 사업주 관련사항
  - 법 제31조 제1항 :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미실시시 500만원이하 벌금
- ◎ 안전관리자, 관리감독자 관련사항
  - 법 제31조 제1항 : 상기와 동일
- ◎ 근로자 관련 사항
  -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
    - : 중앙선 침범에 해당
  -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
    - : 제한속도 위반에 해당